

의안번호	2214621
의 퇴 인	문진석 의원
회 답 일	2025.12.9.
추 계 번호	25B64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시설(이하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함(제3호 신설) 3. <u>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2	안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안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시설(이하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정안은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기관¹⁾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의 인정심사를 거쳐 운영됨²⁾
 - 2025년 12월 기준 49개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등의 장은 판정기준(운영계획,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정심사를 해야 하며, 인정심사를 완료 후 15일 이내에 ① 적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②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이사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 확인하여 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서 등록 사실을, ② 불인정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광역본부 등의 장에게 통지한다.

[표 1] 민간안전체험교육장 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1	엣스퍼트 안전체험장	서울 마포	(주)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2	SECL 안전체험관	서울 강동	삼성엔지니어링(주)
3	안전문화체험관	서울 영등포	현대건설(주)
4	안전체험교육관	서울 강서	(주)케이티서비스 북부
5	LGD 파주 안전학교체험관	경기 파주	엘지디스플레이(주)
6	평택 안전 체험교육장	경기 평택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7	생산기술원 안전체험장	경기 평택	엘지전자(주)
8	롯데하이마트 VR안전체험교육장	경기 이천	롯데 하이마트(주)
9	평택 환경안전체험관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0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 오산	소방재난본부
11	Safety Academy	경기 용인	삼성물산(주)
12	GS건설 안전혁신학교	경기 용인	GS건설(주)
13	Safety Playground	경기 수원	삼성전자(주) SAIT
14	CJ대한통운 안전체험관	경기 광주	CJ대한통운(주)
15	K-Water 안전체험교육관	경기 화성	한국수자원공사
16	SHE 체험교육관(이천캠퍼스)	경기 이천	에스케이하이닉스(주)
17	한국안전보건평가원(주) 안전체험교육장	경기 평택	한국안전보건평가원(주)
18	LG마그나 안전체험교육장	인천 서구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
19	항만안전체험관	인천 중구	한국항만연구원 인천연수원
20	한라시멘트 안전교육센터	강원 강릉	한라시멘트(주)
21	SHE 체험교육관(청주캠퍼스)	충북 청주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2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체험교육장	충북 청주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23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체험교육장	충북 청주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4	(주)LG화학 청주공장 안전체험교육장	충북 청주	(주)LG화학
25	종합안전체험교육장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26	KOGAS 안전체험교육장	충남 당진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건설단
27	당진발전본부 체험식안전교육장	충남 당진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28	한화토탈에너지스 VR안전체험장	충남 서산	한화토탈에너지스(주)
29	(주)LG화학 대산공장 안전체험교육장	충남 서산	(주)LG화학
30	현대모비스 SH&E 아카데미	충남 아산	현대모비스(주)
31	LG U+ 안전체험관	대전 유성	(주) 엘지유플러스
32	kt service남부 안전체험교육관	대전 서구	(주)케이티서비스남부
33	안전한숲캠퍼스	대전 유성	DL이앤씨(주)
34	SK텔레콤 안전체험교육장	대전 중구	에스케이텔레콤(주)
35	LGD 구미안전학교 체험관	경북 구미	엘지디스플레이(주)구미공장
36	한울 산업안전교육장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주)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37	하동발전본부 안전문화 교육관	경남 하동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38	안전교육센터 S+	경남 창원	현대위아(주)
39	LG스마트파크 안전체험센터	경남 창원	엘지전자(주)
40	울산안전 체험관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소방본부
41	현대중공업 안전체험교육장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42	S-OIL 사신프로젝트 안전체험교육장	울산 울주	안전종합기술원(주)
43	석원기공(주) 안전체험교육장	울산 울주	석원기공(주)
44	특수재난훈련센터 안전체험교육장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45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안전체험교육센터	울산 울주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46	KEPCO 안전체험교육센터	부산 진구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47	항만안전체험관	부산 남구	한국항만연구원 부산연수원
48	공정안전체험교육	전남 여수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
49	LG화학 여수공장 안전체험교육장	전남 여수	(주)엘지화학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